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의 제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치”를 “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장구”를 “안전장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후방영상장치

③ 법 제14조의8에 따른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후방영상장치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다. 집게차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준하는 장치

2.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시각적 경계용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나. 청소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내용을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사전에 알릴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등·하교 시간, 등·하원 시간 또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라. 다음 구분에 따른 인원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 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8조의6에 따른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이 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 항의 안전기준이 제2항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작업하는 경우: 2명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또는 집계 조종석이나 운전석에서 작업반경 내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안전장치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장소, 청소 차량 등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따라 수집·운반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또는 주민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허가·신고 관청의 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제18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별표 11 제1호자목 단서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는 경우

제3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4조의10제2항 각 호의 서류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를 “각 호와 같으며, 해당”으로,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을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제41조제7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제41조제7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제41조제7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09 바이오가스화 공정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
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
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
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

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5 커피찌꺼기

51-17-26 버섯폐배지

51-17-27 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04 태양광 폐패널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반침목

51-20-27 폐가구류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반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

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폐사료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 폐전지류

51-41-01 폐일차전지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41-08 폐연료전지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51-48-00 농업용 폐암면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0-04 폐가구류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91-17-02 버섯폐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8-03 영농폐기물(폐암면)

91-19-00 폐소화기류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91-21-02 합성수지 컵

91-21-03 금속 컵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사용하는”을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것 또는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한 것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유형

별표 4의2 제2호나목4) 중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를 “고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3) 중 “버섯재배용”을 “농업용”으로 한다.

별표 4의3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11-03-00예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1-01-09	바이오가스화 공정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별표 4의3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11-03-00의 51-17-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1, R-3-2, R-3-3, R-3-4, R-4-7, R-4-8”로 하고, 같은 표 51-17-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를 “R-3-1, R-3-2, R-3-3, R-3-4, R-4-7”로 하며, 같은 표 51-17-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2”를 “R-2-2, R-3-1, R-3-2, R-3-3”으로 하고, 같은 표 51-17-0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3-1, R-3-2, R-3-3, R-3-4, R-4-7”로 하며, 같은 표 51-17-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2, R-3-4”를 “R-2-2, R-3-1, R-3-2, R-3-3, R-3-4, R-4-7”로 하고, 같은 표 51-17-07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3-1, R-3-2, R-3-3, R-3-4, R-4-7”로 하며, 같은 표 51-17-08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1, R-3-2, R-3-3, R-3-4, R-4-7”로 하고, 같은 표 51-17-1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1, R-3-2, R-3-3, R-3-4, R-4-7, R-4-8”로 하며, 같은 표 51-17-2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3-1, R-3-2, R-3-3, R-3-4, R-4-7, R-5-3”으로, 같은 란 중 “R-9-3,R-10”을 “R-9-3, R-10”으로 하며, 같은 표 51-17-2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3-1, R-3-2, R-3-3, R-3-4, R-4-7, R-5-3”으

로 하고, 같은 표 51-17-23의 재활용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R-3-1, R-3-2, R-3-3, R-3-4, R-4-7, R-5-3, R-9-1, R-9-3, R-10
별표 4의3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11-03-00의 51-17-2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2”를 “R-1-2, R-3-1, R-3-2, R-3-3, R-3-4, R-4-3, R-4-7”로 하고, 같은 표 51-17-2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를 “R-3-1, R-3-2, R-3-3, R-3-4, R-4-5, R-4-7”로 하며, 같은 표 51-17-2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1, R-2, R-3-1, R-3-2, R-3-3, R-3-4, R-4-7, R-4-8”로, 같은 란 중 “R-5-2”를 “R-5-2, R-5-3”으로 하며, 같은 표 51-17-27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1”을 “R-3-1, R-3-2, R-3-3, R-3-4, R-4-7, R-5-1”로 하고, 같은 표 51-17-2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3-1, R-3-2, R-3-3, R-3-4, R-4-3, R-4-7, R-5-3”으로 하며, 같은 표 51-17-3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1”을 “R-3-1, R-3-2, R-3-3, R-3-4, R-4-7, R-5-1”로 하고, 같은 표 51-17-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1, R-3-2, R-3-3, R-3-4, R-4-7, R-4-8”로 하며,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8-04	태양광 폐패널	R-2-1, R-3-1, R-3-2,	해당 없음
		R-3-3, R-4-1, R-10	

별표 4의3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11-03-00의 51-41-04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을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로 하고,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8-00	농업용 폐암면	R-1-1, R-1-2, R-2-1,	해당 없음
----------	---------	----------------------	-------

		R-2-2, R-10	해당
		R-3-1, R-3-2, R-3-4,	
		R-4-2, R-5-3, R-10	

별표 4의3 제3호의 91-1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1, R-3-2, R-3-3, R-3-4, R-4-7”로 하고, 같은 호 91-17-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를 “R-3-1, R-3-2, R-3-3, R-3-4, R-4-5, R-4-7”로 하며, 같은 호 91-17-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1, R-2, R-3-1, R-3-2, R-3-3, R-3-4, R-4-7, R-4-8”로, 같은 란 중 “R-5-2”를 “R-5-2, R-5-3”으로 하며, 같은 호 91-17-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8”을 “R-3-1, R-3-2, R-3-3, R-3-4, R-4-3, R-4-7, R-4-8”로 하고, 같은 호 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18-03	영농폐기물(폐암면)	R-1-1, R-1-2, R-2-1,	해당 없음
		R-2-2, R-10	
		R-3-1, R-3-2, R-3-4,	해당
		R-4-2, R-5-3, R-10	

별표 4의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의 폐기물처리기술사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의3 제2호마목2)다)(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다)(4)(가) 중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한다.

(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별표 8 제1호아목 중 “한다”를 “하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정기검사 항목 중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허가 또는 설치승인신고서 사항과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종처분시설”을 “매립시설”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립한 폐기물을 파낼 수 있으며, 굴착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제2호나목1)(2)의(가) 중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한다.

1) 매립한 폐기물의 재활용,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상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6 20호를 21호로 하고, 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별표 4의2 제5호나목1)에 따라 폐기물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미만 혼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 서식, 제21호의9 서식 및 제23호,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년도)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앞쪽)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공동주택명(아파트 또는 건물명)		
	⑦ 세대수			⑧ 사용승인일		
	⑨ 주소(배출현장)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정보	⑩ 계약 내용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품목		수거주기		
	⑪ 수탁 처리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허가/신고사항				

[illegible]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검사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 지 정 연월일		검사대상 폐기물처 리시설의 종류	
기술 인력	<u>성명</u>	<u>최종 학력</u>	<u>경력 (입사일)</u>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발급 연월일	
시설 보유 현황	<u>실험실 면적</u>						
	<u>실험실 후드시설</u>						
	<u>장비 · 시료보관실 면적</u>						
	<u>사무실 별도구성</u>						
장비 보유 현황 (장 비 의 종 류 및 규 격)	<u>장비</u>	<u>수량</u>	<u>자산관리번호</u>	<u>모델명 (제조사)</u>	<u>검 · 교정일</u>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시 · 도지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설치

[] 정기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치자	① 상호		② 구분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⑥ 검사를 받으려는 날					
⑦ 시설제원					
설치장소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시설종류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처리대상 폐기물 조성(%)					
처리공정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 설치, []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안내	<첨부서류> 1. 소각시설, 열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3.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 ② 구 분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시설 또는 제25조(폐기물처분업) 또는 자가				수수료 없음

	<u>처리업 중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u>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결재		→
			검사결과서 발급		
신청인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사용종료·폐쇄검사 80일)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④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⑤구분(작성안내 참조)		⑥승인·허가번호	제 호
--------------	--	----------	-----

⑦승인(허가)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일)

⑧사용개시 예정일		⑨사용종료 예정일	
-----------	--	-----------	--

⑩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

⑪시설종류	[]관리형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	-------------------------	--	--

⑫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	--	--

⑬매립면적	(㎡)	매립용량	(㎡)
-------	-----	------	-----

⑭침출수 처리시설	(㎡/일)	그 밖의 사항	
-----------	-------	---------	--

⑮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	(㎡)		
-------------------------------	-----	--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제69조

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설치, []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u><첨부서류></u> 1. 설치·정기 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u>바.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u>마.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수수료
--	---	-----

		* ⑤ 구 분 :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시설 또는 제25조(폐기물처리분업) 또는 자가 처리업 중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결제	→	검사결과서 발급
신청인				검사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1. 29.>

제 호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설치 ☐ 정기	검사결과서
설치자	상호		구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장소					
검사연월일					
검사대상시설 제원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시설종류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폐기물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처리공정					
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불임)				
검사자	(인)	(인)	(인)		
특기사항 (검사자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소각시설, ☐ 열균분쇄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 설치, ☐ 정기)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검사기관의 장 인					

문서번호 수 신 시행일 발 신 인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문서번호
수 신

시행일
발 신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 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 나. ~ 다. (생략)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 <u>호장구</u> 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 할 것 3. (생략) <u><신설></u>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u>의 안전기준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u>안전장치</u> 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u>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u> <u>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u> <u>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후방</u> <u>영상장치</u> 나. ~ 다. (현행과 같음)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u>안</u> <u>전장비</u> 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 할 것 3.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4조의8에 따른 장소에서</u> <u>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u> <u>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u> <u>준수해야 한다.</u>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u>안전장치</u> 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u>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u>

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후방영상장치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다. 집계차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준하는 장치

2.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 시각적 경계용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나. 청소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내용을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사전에 알릴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등·하교 시간, 등·하원 시

간 또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

라. 다음 구분에 따른 인원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나 목에 따른 인원. 단,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8조의6에 따른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이 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 항의 안전기준이 제2항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작업하는 경우: 2명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또는 집계 조종석이나 운전석에서 작업반경 내 보행자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집
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
을 준수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안전장치의 정
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
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장소, 청소차량 등 작업환
경 및 작업내용에 따라 수
집·운반작업 과정에서 준
수해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
성하여 2년간 보관할 것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또는
주민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개
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허가·신고 관청의 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
게 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9. 별표 11 제1호자목 단서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는 경우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신청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4조의10제2항 각 호의 서류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

고 및 검사) ① ~ ④ (생략)	고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⑤ ----- ----- ----- 와 같으며, 해당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3. ----- ----- -----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 ----- ----- ----- ----- -----.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1. ----- ----- -----

가. ~ 다. (생 략) <u><신 설></u>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u> <u>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 마. (생 략) <u><신 설></u>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마.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u> <u>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 다. (생 략) <u><신 설></u>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u> <u>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 다. (생 략) <u><신 설></u>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u> <u>설치신고증명서 사본</u>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